

원격교육지원센터 규정

- 제정 : 2021. 2. 26.
- 제정 : 2022. 3.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원격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2. 교직원 원격교육 역량 제고 지원
3. 학습관리시스템(LMS) 관리
4.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5. 기타 센터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센터는 본교 교육혁신원 내에 둔다.

②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 및 전문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3.1.>

③ 센터에는 업무 처리를 위해 직원, 조교를 둘 수 있다.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① 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7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되,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센터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의 직원은 간사가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연간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1-30 원격교육지원센터 규정

2. 센터의 연간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차년도 환류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 ③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